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88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7. 선정자 B에게 한 취득세 3,729,880원 및 지방교육세 213,1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취득세 3,388,000원 및 지방교육세 193,6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선정자 C에게 한 취득세 7,252,000원, 지방교육세 414,4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가. 선정자 C는 망 D(2019. 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9. 7. 29. 및 같은 달 31. 상속 재산인 [redacted]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① 주택'이라 한다), F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② 주택'이라 한다), G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③ 주택'이라 한다), H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④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④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과세물건	과세표준(원)	세 액		
			합 계(원)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① 주택	E	1,210,000	35,810	33,880	1,930
② 주택	F	121,000,000	3,581,600	3,388,000	193,600
③ 주택	G	259,000,000	7,666,400	7,252,000	414,400
④ 주택	H	132,000,000	3,907,200	3,696,000	211,200
합 계		513,210,000	15,191,010	14,369,880	821,130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0. 2. 10. 이 사건 ①, ④ 주택은 선정자 B의 소유로, 이 사건 ②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③ 주택은 선정자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2020. 3. 9. 피고에게,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각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특례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한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② 주택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3,388,000원 및 지방교육세 193,600원을, 선정자 C는 이 사건 ③ 주택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7,252,000원, 지방교육세 414,400원을, 선정자 B은 이 사건 ①, ④ 주택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3,729,880원 및 지방교육세 213,130원을 모두 환급(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17. '상속 개시 당시 선정자 C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원고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정자 C와 원고는 각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정자 B은 이 사건 ①, ④ 주택을 상속하여 2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정자 C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는 만 30세 이상의 성년 자녀로서 별도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선정자 C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C는 각각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선정자 B은 무주택자였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을 한꺼번에 상속 받아 부득이하게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의 특례 세율을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원고와 선정자들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그런데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제89조(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1가구'와 달리 '1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6호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1가구'와는 다른 용어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1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만으로 '1가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되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직계비속은 이와 상관없이 '1가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므로, 법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상 '1가구'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정자 C와 상속 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와 선정자 C가 상속으로 이 사건 ②, ③ 주택을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B이 이 사건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이 사건 ①, ④ 주택)을 취득한 이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선정자 B에게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별지1]

선 정 자 명 단

1. A(선정당사자)

2. C

3. B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 22. 대통령령 제29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1-10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끝.